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김종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4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김종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3명)

1. 주문

-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가 재심의할 때, 국민경제를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8월 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정부로 이송하였음.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25만 원 지급법’)의 제안자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가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제고되어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25만원 지급법’은 제안자들의 주장과 달리, 일시적으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초래해 물가 상승을 불러와 오히려 민생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급격한 물가상승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민경제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임.
- 또 이 법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12조 8000억~17조 9000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의 상승을 불러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큼. 2017년 600조 원 대이던 국가채무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치며 2022년 1,000조 원을 넘겼고, 이런 추세가 이어져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돌파해 큰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이런 막대한 국가부채는 저출산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나라 빚을 크게 늘리는 것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행위임.
- 이 법안은 25만원 지급의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여부와 그 규모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이다. 이러한 고유사무를 국회가 전 지자체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음.
- 이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특별법으로 부당하게 강요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25만원 지급법’을 재심의할 때 이 법안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국회에 이를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다. 기타 : 이 건의안은 대통령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재의요구권 불행사시에는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심의되지 않아야 함.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8월 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만원 지급법’의 제안자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가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제고되어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만원 지급법’은 제안자들의 주장과 달리, 일시적으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초래해 물가 상승을 불러와 오히려 민생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민경제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 이 법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12조 8000억~17조 9000천억 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의 상승을 불러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큼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600조 원 대이던 국가채무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치며 2022년 1,000조 원을 넘겼고, 이런 추세가 이어져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

산(GDP)의 50%를 돌파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국가부채는 저출산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나라 빚을 크게 늘리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25만원 지급의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 국민대상 지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여부와 그 규모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이러한 고유사무를 국회가 전 지자체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도록 강제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법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25만원 지급법’을 재심의할 때 이 법안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국회에 건의합니다.

2024. 8.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